



제418회국회(정기회)
제7차기획재정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박정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923호)

2024. 11.

기 획 재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이정은

목 차

I . 개요	1
II . 주요 내용별 검토	3
1. 중소기업 해외특허비용 세액공제 신설 (박정의원안)	3

I. 개요

1. 박정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1923호)

가.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박정의원 등 10인
- (2) 제 안 일 : 2024. 7. 18.
- (3) 회 부 일 : 2024. 7. 19.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업의 연구개발 관련하여 다양한 조세지원을 하고 있지만, 연구개발의 결과로 도출되는 특허 등 지식재산과 관련된 조세지원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오늘날 지식재산은 기업의 경영활동에서 중요한 자산이 되고 있으며, 특히 시장 규모가 큰 글로벌 시장에서 유리한 지위를 선점하기 위해서는 해외특허 확보가 필수적임.

하지만 해외특허를 확보하는 데에는 상당한 비용이 수반되며 이러한 제반비용은 특히 영세한 중소기업 등에 부담으로 작용하여, 중소기업이 국제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 참고로 우리나라의 수출 1억불 당 해외출원 건수는 '17년 기준으로 11.7개로 일본(28.5개)의 절반에도 못미치고 있으며, 특히 중소기업의 국내출원의 해외출원 연계비율은 대기업의 약 1/10 수준으로 매우 저조한 상황임. 해외특허에 대한 미흡한 투자는 타국 경쟁기업의 기술 선점으로 이어지고,

결국 세계시장에서 우리기업의 경쟁력 약화라는 악순환을 초래하므로, 기업이 주요국 해외특허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해줄 필요가 있음.

이에 중소기업이 해외특허 출원 및 등록을 위해 지출한 금액에 대해서는 그 비용의 25%를 세액공제 해주어, 중소기업이 해외특허를 적극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식재산 기반의 혁신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11조 신설).

II. 주요 내용별 검토

1. 중소기업 해외특허비용 세액공제 신설 (박정의원안)

현 행	개정안
☐ <신 설>	☐ 중소기업 해외특허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안 제11조) ○ 세액공제 대상: 중소기업이 해외특허권 등을 출원하거나 등록하는 경우 출원료, 심사청구료, 대리인 수입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외특허비용(다만, 국가·지자체로부터의 출연금 등 자산을 지원받은 금액 제외)을 지출한 경우 ○ 세액공제율: 해외 특허비용의 25% ○ 적용기한 없음 ○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적용시 동 세액공제 미적용 ○ 추계과세기 미적용 ○ 이월공제 적용 ○ 시행일: 2025. 1. 1. ○ 적용례: 법 시행 후 최초로 지출하는 분부터

* 박정의원안 2024. 7. 18. 제출(의안번호 1923)

☐ 개정안은 중소기업이 지출한 해외특허비용의 일정비율을 법인세 등에서 공제하는 과세특례를 신설하여, 중소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비용부담을 완화하고 기술경쟁력 확보를 지원하려는 것임.

☐ 우리나라의 특허출원 건수가 증가 추세에 있으며, 2023년 특허출원 건수가 24만 3,310건으로 2019년 대비 2만 4,335건 증가했음.

[연도별 특허출원 건수]

(단위: 건)

연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건수	218,975	226,759	237,998	237,633	243,310

자료: 특허청, 「지식재산통계연보」

또한, 2023년 국제특허출원 건수는 22,288건을 기록하여 중국(69,610건), 미국(55,678건), 일본(48,879건)에 이어 세계 4위였음. 이는 전년 대비 1.2% 증가한 수준임.

□ 개정안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효과가 기대될 수 있음.

첫째, 원천기술 확보의 중요성이 강조되며 지적재산권의 선점 필요성이 대두되는 상황에서, 중소기업의 지적재산권 출원·등록 등에 수반되는 비용부담을 완화하여 지적재산권 출원 등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특허청의 지식재산활동 실태조사에 따르면 대기업들은 지식재산을 담당하는 전담조직과 전문인력을 구성하여 지식재산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으나, 중소벤처기업 등은 지식재산활동 애로사항과 전문인력 부족등으로 전략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둘째, 기존 연구¹⁾에 따르면 선행기술조사가 국내 및 해외 특허의 출원 및 등록 성과를 유의하게 제고하는 것으로 분석²⁾되고 있는데,

1) 임부루·박규호·이근, '선행기술조사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 특허성과를 중심으로', 기술혁신연구 19권1호, 기술경영경제학회, 2011.6.

2) 특허기술동향조사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술적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투입요소, 개발주체 특성, 자금공급

동 세액공제를 통하여 중소기업의 특허정보 조사·분석을 장려하면 중소기업 R&D의 효과성을 제고하는 데 기여하는 측면이 있을 것으로 보임.

중소기업의 지식재산경영역량 제고는 우수중소기업의 특허권 확보를 통한 기술사업화 성공으로 경영성과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³⁾

□ 다만, 개정안에 대하여는 다음의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특허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는 효과성이 낮고, 동일 업종이라도 특허정보 조사·분석을 수행하였지만 법인세 과세표준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세제지원을 받지 못하여 수평적 형평성이 저해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으므로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

기획재정부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 의뢰하여 수행된 「2017 조세특례 예비타당성평가(I) 중소기업이 지출한 특허비용 세액공제」에 따르면, 동 제도와 유사한 제도⁴⁾가 도입될 경우 산업재산권의 취득실적이 증가하는지 분석한 결과 유의미한 연관성이 발견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되었음.

둘째, 현재 특허 비용 중 정보비용(조사·분석비용)에 대해서는 R&D 비용 세액공제를 통해 지원 중이며, 특허청 재정사업인 ‘지식

자 요소, 해당 사업의 분야별 특성 등을 통제하여 추정한 결과, 특허기술동향조사 지원을 받은 과제가 평균적으로 과제당 0.663개~0.729개의 특허를 더 출원하고, 0.171개~0.206개의 특허를 더 등록하는 것으로 나타남

3) 정연준·정덕화, ‘중소벤처기업의 지식재산 경영활동,정부지원컨설팅,지식재산성과 간의 구조적 관계분석’,한국지식정보기술학회, 2024

4)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국내외 특허권·실용신안권·상표권·디자인권을 출원하거나 등록하는 과정에서 지출한 금액의 100분의 25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제도

재반기반 해외진출지원사업⁵⁾을 통해 해외특허 출원을 지원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문 의 처
02)6788-5155

5) 해외지식재산센터를 통해 중소기업의 해외특허출원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본 사업 예산으로 2024년 140억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음.